

의안번호	2202780
의 퇴 인	김위상 의원
회 답 일	2024.8.13.
추계번호	24B266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사업주는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때 정년퇴직자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정년에서 1년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년에서 2년 이상의 기간까지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그 소속기관 또는 자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한한다)가 정년퇴직하는 경우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본문의 기간까지 재고용하여야 함(제2항)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의무규정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재고용하는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경우 정년 이전에 근무하였던 부서와 직종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임
 -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중 다자녀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년 이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고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정년에서 1년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년에서 2년 이상의 기간까지 재고용되므로, 본 개정안의 조치에 따라 이들의 평균 재직기간 등이 증가하여 인건비 및 퇴직수당 등의 변동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용할 수 있는 인건비 규모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인력을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본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채용 규모를 유지하고, 이들에게 동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평균 재직기간 등이 증가하여 인건비 및 퇴직수

1)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당 등의 증가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정년퇴직자의 현황과 이들의 임금 분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정년의 연장과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정년 연장이 미치는 영향력이 기업 및 산업의 규모, 노사조합의 교섭력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평가된다는 점과²⁾ 장래에 발생할 정년 연장에 따른 채용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직무대리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박인재

□ 대표연락처

2)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60세 정년의무화의 고용효과」, 2020.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